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장학규정

일부개정 2024. 2. 22. 규정 제901호

1. 개정이유

○ 박사과정 장학금 수혜기간 제한 문구를 「한국체육대학교 학칙」 제32조 제2항과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함.

「한국체육대학교 학칙」 **제32조(수업연한)** 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. ② 석사과정과 **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**년으로 하며, 석사.박사 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교내.외의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각각 6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8.12.17.> ③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한다. <개정 2020.5.1., 2021.9.13.>

2. 주요내용

○ 박사과정 장학금 수혜기간을 학칙의 수업연한(6학기→4학기)에 맞게 문구 정비(제8조)

3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(참고) : 「한국체육대학교 학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붙 임 : 개정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

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장학규정 개정문

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6학기”을 “4학기”로 한다.

부 칙(제901호, 2024. 2. 22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수혜기간의 제한)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석사과정은 4학기(특수대학원 5학기), 박사과정은 6학기를 초과 할 수 없다.	**제8조(수혜기간의 제한)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4학기----------.
	부 칙(제901호, 2024. 2. 22.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